

『구미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0년 10월 28일

나. 발 의 자 : 김영호, 김상조, 김수민, 김익수
김춘남, 박세진, 손홍섭, 윤영철
이명희, 정하영, 황경환 (11인)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0월 28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11월 5일

제1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김 영 호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참여·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시민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구미시지역사회안전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)
-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12조, 제13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, 「청소년기본법」, 「범죄피해자보호법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조례안은

- 법 질서 확립 및 시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살기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위해 범죄행위로부터 아동·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3조 및 제4조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시와 시민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,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의 설치, 구성, 기능 등을 명시하였으며, 안 제12조, 제13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민단체의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제정조례안은 강력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타 법령에 저촉사항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